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10시 03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교통	3
여수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

2022.12.22 조회수 373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 최현웅 연락처 061-659-4156

일반금지구역(황색 실선, 점선) 신고대상 제외, 절대금지구역은 신고횟수 무제한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

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교통안전이라는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양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된다.

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 중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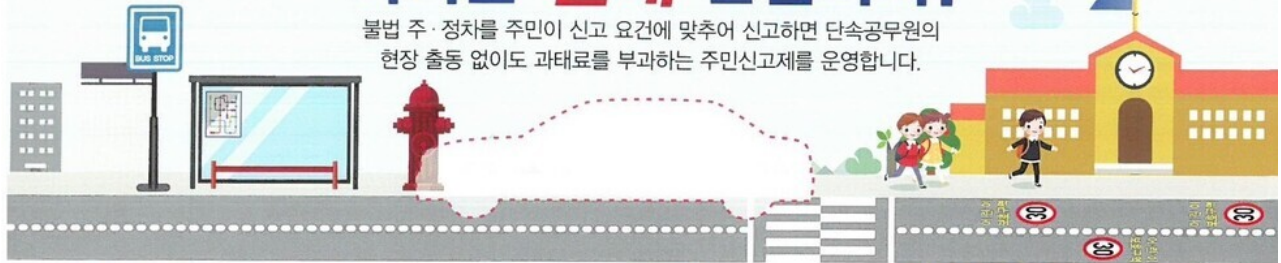


(<http://www.yeosu.go.kr>)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신고대상 구간

안전초등학교 정문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금지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 / 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 /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5-1 여수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jpg (372 hit/ 480.0 KB) [↓](#)
[미리보기](#)

5-2 여수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jpg (394 hit/ 643.1 KB) [↓](#)
[미리보기](#)

이전글

다음글

여수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27일부터 '다회용기...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창의융합 캠...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